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안내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 단지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후 실제 청약 시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일정 및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구분	일시	방법	장소
특별공급 청약 신청	3월 07일(월)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 '청약홈' 어플리케이션 사용
당첨자 서류 제출	3월 21일(월) ~ 23일(수) 10:00 ~ 17:30	건보주택 접수 (변경 시 별도 유선 또는 문자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보주택 :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50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구분	84A	84B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	4	13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상세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에게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며, 입주 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 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 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정2차 골드클래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신청 배점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정	5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공급 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전라남도)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 저축 가입 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 신청자가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됨.
 ※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 5. 8.)에 따름니다]